

강사 인사 규정

제정 : 2019. 6. 17.

개정 : 2022. 5.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중 “강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말한다.

제2장 임 용

제3조(자격) 강사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시작일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시작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신규채용)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절차는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②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다만, 해당 학부(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③ 임용할 수 있는 학기는 강사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는 해당학기까지로 한다.

제7조(계약) ① 강사는 임용 계약을 한다. <개정 2019.12.1.>

② 강사는 (재)임용 시 ‘강사 임용 계약서’ (별지 1)에 따라 작성하고 ‘신규임용 및 재임용 구비서류’ (별표 2)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1.>

④ 재정지원사업 관련으로 채용된 강사의 경우 계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0.27.>

제3장 재임용

제8조(재임용) ① 본 대학은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한다. <개정 2021.8.30.>

② 강사는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신청서’ (별지 3호)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③ 재임용 평가는 ‘강사 재임용 심사평가표’ (별표 1)를 기준으로 하며,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임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④ 재임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재임용할 수 있다.

⑤ 재임용 심사결과 부적합자(70점 미만)로 탈락한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⑥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재임용 제외조건으로서 연구년 종료, 휴직자 복직, 보직 종료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 2019.12.1.>

제9조(재임용심사위원회) ① 강사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해당 학과(어학교양학부)별 재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전임교원 3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강사 재임용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전체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평가점수를 확정한다.

제10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 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전임교원이 신규 채용된 경우
3. 본 대학이 정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11조(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시 소명) ① 본 대학은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강사 재임용 탈락·거부사유서’ (별지 4)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은 그 결과를 강사에게 최종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무 및 근로조건

제12조(임무)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담당교과목의 강의와 학생 지도
2.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교과목 CQI 등) 작성
3. 학생출결관리와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
4. 성적처리와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
5. 본 대학 지정 및 법령의무교육 이수

(본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등)

② 위 각 호와 관련된 본 대학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수시간)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처우) ① 임금은 본 대학「강사 임용계약서」에 따른다.

②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휴·복직) ① 강사는「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④ 출산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자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강사가 재임용을 원할 경우 제3장 재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 평가를 한다.

제16조(임용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재임용탈락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7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5.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채용비리 등)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6.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당연퇴직) 강사의 당연퇴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또는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경우

제19조(면직사유) 강사의 면직사유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립학교법」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임용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4. 학급·학부(과)가 폐지되었을 경우
5. 강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6. 강사 임용계약에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직위의 해제)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강사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임금의 8할을 지급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임금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임금의 4할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2019.6.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3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8.6.>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과	직번	성명

평가 항목	점수	취득 점수
-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 기간 준수 여부 ※ 입력기간 미준수 시 : 과목당 -3점	10	
- 성적공시 또는 제출 기간 준수 여부 ※ 제출기간 미준수 시 : 강좌당 -3점	10	
- 출결관리 ※ 출석미처리 시 : 1회당 -3점	10	
- 교과목 CQI 작성 여부 ※ 미 작성 시 : 강좌당 -3점	10	
- 강의향상평가 전체교원의 하위 80%이상 ~ 100%	40	
- 강의향상평가 전체교원의 하위 50%이상 ~ 80%미만	35	
- 강의향상평가 전체교원의 하위 30%이상 ~ 50%미만	25	
- 강의향상평가 전체교원의 하위 10%이상 ~ 30%미만	15	
- 강의향상평가 전체교원의 하위 0%이상 ~ 10%미만	0	
- 강의향상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10	
매우노력 노력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7 5 3 0		
- 본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 교육 참여 ※ 미참여 시: 교육당 -2점	5	
- 학과 발전기여도 ※ 학과 교수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학과장이 작성	5	
- 본 대학의 포상 또는 경고 ※ 포상 시 : +5점/회당. 경고 시 : -5점/회당		
합 계	100점(± α)	

심사결과	적 합 (70점 이상)	☐
	부적합 (70점 미만)	☐

- 1) 신규임용 이후 첫 번째 재임용 심사인 경우 평가시행 직전학기에 대하여 평가하고 강의향상평가 점수는 최소 15점 이상 부여함
- 2) 두 번째 재임용 심사인 경우 평가시행 직전 2개 학기에 대하여 누적 평가함. 단, 강의향상평가 %는 직전 2학기의 평균으로 함
- 3)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취득점수가 마이너스 점수로 산출 될 수 있음

- 학과 발전기여도 점수 부여 설명 및 근거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표 2] <개정 2019.12.1.>

신규 임용 및 재임용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부수	신규임용	재임용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	○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각1	○	○
3	재직증명서	1	○	○
4	경력증명서	각1	○	○
5	기본증명서(일반)	1	○	
6	임용계약서(소정양식)	2	○	○
7	신원, 성범죄 등에 관한 조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1	○	○

※ 재임용 시 2, 3, 4번의 서류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제출함.

[별지 1] <개정 2019.12.1.>

강사 임용 계약서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_____(이하 “강사”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대학”	성 명		사 업 의 종 류	교 육
	사업체명칭	인하공업전문대학	사 업 자 번 호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강사”	성 명		전 화 번 호	
	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제1조 (소속 및 직위) “대학”은 “강사”를 인하공업전문대학 ()과에 강사로 임용한다.

제2조 (계약 내용)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임금의 산정방법은 각호와 같으며 이외 제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가. 학기 중 강의료 : 교수시간/매주×운영 주×시간당 강사료
 - 나. 강의 개시(개강)일 전 : 교수시간/1주×1주×시간당 강사료
 - 다. 강의 종료(종강)일 후 : 교수시간/1주×1주×시간당 강사료
3. 시간당 강사료는 「강사료지급규정」 [별표2] 강의시간당 강사료 지급표에 따른다.
4. 교수시간은 해당학기 교수별 교과목 담당표에 따른다.
5.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학기 중 강의료는 4주 단위로 산정하고 수업이 있는 매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 나. 강의 개시(개강)일 전 임금은 학기 개시 후 해당학기 3월, 9월에 지급하고 강의 종료(종강)일 후 임금은 해당학기 2월, 8월에 지급 한다.
6. 교수시간이 없는 학기에는 해당학기의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학기 중 폐강 등의 경우 폐강 전 임금은 지급할 수 있다.
7. 복무 등 근무조건 : 교육관계법령 및 「강사 인사규정」에 따름
8. “대학”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 가. 「강사 인사규정」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다.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라.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마.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강사”는 “대학”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강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변경 시 반드시 교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임용취소) 「강사 인사규정」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계약해지) ① “강사”는 계약기간 동안의 수업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을 특약한다.

② “강사”가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대학”의 제 규정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임용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임용계약이 종료되었음에 동의한다.

제5조(재임용) 재임용 절차 및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는 「강사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고지의무) “대학”은 계약체결 시 “강사”에게 계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기타 계약 조건) ① “강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관할 법원은 본 “대학”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④ “강사”는 “대학”에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내용과 관련규정을 확인(서명)하고 2부를 작성·날인하여 “대학”과 “강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총 장 (인)

(강사) 계 약 자 성 명 (인)

별첨 1. 강사 인사규정 1부.

[별지 2] <삭제 2019.12.1.>

[별지 3]

강사 재임용 신청서

소속학과 :

직 번 :

성 명 :

생년월일 :

<강의향상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작성>

_____학년도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별지 4]

강사 재임용 (탈락 · 거부) 사유서

학과	직번	성명

재임용 (탈락 · 거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심사위원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해 강사의 재임용을 (탈락 · 거부)합니다.

20 년 월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무처장 (인)